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4. 9. 2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8호로 2014년 9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금액을 규정하고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을 예탁으로 일원화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금액 규정 신설(안 제15조)

○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나.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 일원화 (안 제17조)

(현행) 공탁 또는 구금고 예탁

(개정) 구금고 예탁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납세자 입장에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지방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5조에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중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하기 10일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통지 하도록 함.

 - 안 제17조에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을 구금고로 일원화하였음.

 - 안 제52조에 “영 제110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규정을 추가함.

- 이 개정 조례안은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¹⁾ 금액기준이 종전 ‘100만원 이상’ 체납자(3회이상)에서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2013.4.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대상을 ‘3회 이상 체납하면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예고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간접적 수단으로써 체납징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적절한 개정으로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다만 관허사업 제한 규정의 경우 상위법령 공포일(2013. 1. 1 개정, 2013. 4. 1시행)로 부터 1년 9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개정임을 감안할 때 법령개정의 시의성 제고가 요구되며, 향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의 신속한 파악 및 절차 이행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경신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로 주택건설사업허가, 주류제조 면허, 유기장영업허가, 식품접객업허가, 공장설립 신고, 체육시설업신고, 건설기계사업등록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 모두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음.

참 고 자 료

1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1.>